

조교임용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"본교" 라 한다)의 조교 임용과 이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 및 업무) <삭제 2019.1.23.>

- ① 조교는 행정조교와 학사조교로 구분한다.<신설 2019.1.23.>
- ② 조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 2019.1.23.>
 1. 학사조교 : 학부(전공)의 업무보조, 학과수업·실습 및 교수연구 등의 보조<신설 2019.1.23.>
 2. 행정조교 :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의 업무 보조<신설 2019.1.23.>

제3조(자격) ① 조교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,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일 근무하며 대학 및 대학원 행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<개정 2019.1.23.>

- ② 직원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조교로 임용할 수 없다.<개정 2012.12.21.><개정 2019.1.23.>
- ③ <삭제 2019.1.23.>
- ④ <삭제 2019.1.23.>

제4조(근무기관) <개정 2012.12.21.><개정 2015.1.13.><삭제 2019.1.23.>

제5조(임용절차) <개정 2012.12.21.><삭제 2019.1.23.>

- ① 학사조교는 학부(전공)장,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.<신설 2019.1.23.>
- ② 행정조교는 부서장의 추천과 행정지원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<신설 2019.1.23.>

제6조(임용기간) ① 조교는 매년 학기 초에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- ② 조교는 학부(전공), 대학원 및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씩 2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<개정 2015.1.13.><개정 2019.1.23.>

제7조(정원조정) 조교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8.11.5>

제8조(임용서류) 조교로 임용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 단, 재임용 시에는 재임용 추천서만 제출한다<개정 2015.2.1.>.

1. 조교 임용 추천서 1부.
2. 이력서 1부.
3. 인사기록카드 1부.(행정조교에 한함)
4.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.
5. 주민등록등본 1부.

제9조(교육) 조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면직) 조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신체적인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
2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
3.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할 때
4.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
5. 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할 때
6. 조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할 때

제11조(급여) 조교의 급여는 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19.1.23.>

- ① <개정 2015.1.13.><삭제 2019.1.23.>

2-16-2-3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

구분	기본급	호봉	총급여
2년 이상 ~ 3년 미만	최저임금제에 준한 임금	3호봉	최저임금제에 준한 금액 + 월 10만원 추가
1년 이상 ~ 2년 미만	최저임금제에 준한 임금	2호봉	최저임금제에 준한 금액 + 월 5만원 추가
~1년	최저임금제에 준한 임금	1호봉	최저임금제에 준한 임금

② <신설 2012.12.21.><삭제 2019.1.23.>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2. 4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11. 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이 변경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조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3. 이 변경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조교에 대하여는 제6조 제2항, 제11조를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 조교재임용추천서]

조교 재임용 추천서

성 명		성 별 : 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
주민등록번호	-	연 령 :
주 소		
학 력		
경 력		

위 사람을 () 조교 재임용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자 직위 :

성명 :

인

인

인

- 붙임 1. 이력서 1부.
2.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.

예원예술대학교총장 귀하